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92호

나. 발 의 자 : 홍국표 의원(찬성자 35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8월 14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유급병가 용어에 익숙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 취약 노동자의 이해를 돕고자 2023년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유급병가와 병기하였으며, 조례상 “유급병가” 를 “입원 생활비” 로 명칭 변경하여 취약노동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 치료 또는 검진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부칙 적용 기간이 2022.12.31.자로 종료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및 조문 상의 “유급병가지원” 을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나. 부칙의 적용 기간이 종료된 한시적 지원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 ~ 2호).
- 다. 위원회 명칭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에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로 변경함(안 제7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의 명칭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발의됨.

#### 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개요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노동자, 노무제공자·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외래치료·검진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보전하고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1.3.)하여 노동약자의 건강권과 생계 보장권 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 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 지원일수 :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사업목표 : 5,500명
- 소요예산 : 4,395,971천원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총 2만 4천여명이 신청하여 약 2만여명에게 약 100억원의 입원 생활비가 지급된 상황임.

###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추진실적 >

구분	신청건수	지급건수	지급액(백만원)	1인 평균 지급액(천원)
합계	24,244	20,382	10,079	494
2019년	4,345	2,675	1,128	421
2020년	8,622	8,061	3,494	433
2021년	5,201	4,580	2,552	557
2022년	6,076	5,066	2,905	573

## 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

### (1) 사업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 동 개정안은 올해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의 사업명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관련 위원회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로 명칭이 각각 변경됨.

- 최근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정책사업에 전문용어, 축약어, 외래어를 지양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서울수도 관련 조례<sup>1)</sup>를 마련하여 시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상기의 용어 변경을 통해 사업수혜자의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2) 코로나19 백신 관련 한시적 지원 내용 삭제

- 동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한시적 지원이 작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 및 소득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 입원 생활비 지원 -----

1)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13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한다.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5. 일제 잔재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한다.

현행	개정안
<p>보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②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일에 한하여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p> <p>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p> <p>2.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u>입원 생활비</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 대하여 1일의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2021.9.30.개정)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백신휴가제도(고용노동부 권고사항)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러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한시적 지원의 부칙<sup>2)</sup> 적용 기간이 작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조문의 실효성이 없어져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문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유급병가 한시적 지원 및 적용기간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유급병가지원은 공포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라.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명칭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정부(보건복지부)는 유사사업인 ‘상병수당’ 사업을 2022년 7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향후 동 사업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상병수당 시범사업’과의 비교 >

구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2단계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sup>3)</sup>	
지원대상	(소득)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 재산 요건 없음	(소득)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지원금액	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일 46,180원(2023년 최저임금의 60%)	
지원일수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최대 120일	
비 고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8057

3)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